



# 2026 매일경제 골프엑스포 참가계약서

2026. 2. 20(금) ▶ 22(일) COEX Hall B

## 1 신청자/계약자 정보

업체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대표자	
				홈페이지	
전시회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직통번호		휴대폰		이메일
세금계산서 담당자			연락처		계산서 이메일
전시 품목					

## 2 부스신청/부대시설 신청

구분	신청내역(A)	단가(VAT별도)(B)	신청금액(VAT별도) (A*B)
독립부스	부스	2,520,000원/부스	원
조립부스	부스	2,870,000원/부스	원
프리미엄부스(목공)	부스	3,220,000원/부스	원
시타석(3mx6m)	타석	6,000,000원/타석	원
전기	단상 220V(60Hz)	kw	100,000원 / kw
	삼상 220V(60Hz)	kw	100,000원 / kw
	삼상 380V(60Hz)	kw	100,000원 / kw
	24시간	kw	150,000원 / kw
인터넷	port	180,000원 / port	원
압축공기/급배수	개소	250,000원 / 개소	원
소 계			원
부가세(10%)			원
합 계			원

※ 1부스(3mX3m), 1타석(3mx6m)이며, 독립부스는 2부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참가비 납부

참가비 납부계좌 참가비 납부기한 참가비 잔금 납부기한	예금주(매일경제신문사) 우리은행 101-05-024596 사무국 승인 - 인보이스 발행 후 - 1주일 이내 2026년 1월 30일(금)
-------------------------------------	---

□ 당사는 본 전시회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하단 수록)을 수락하고, 상기와 같이 참가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표자 (인) | 담당자 (인) | 계약일자      년      월      일

- 본 계약서에 날인 한 상기 회사는 본계약을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한다,
- 본 계약서에서 제공해 주신 정보는 전시회 참가와 관련된 안내를 위하여 활용됩니다.

KPGA·매일경제 골프엑스포 사무국

☎ 02-555-7153 ✉ kgolf@kfairs.com

# 2026 KPGA·매일경제 골프엑스포 참가 규정 및 계약 조건

##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를 참가하기 위하여 소정의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하며 참가신청 계약서 상에 게재된 회사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 대리인 등을 말한다.
2. '주최자'라 (주)매일경제와 (사)한국프로골프협회, K. Fairs(주)를 말한다.
3. "전시회"라 함은 "2026 KPGA·매일경제 골프엑스포"를 말한다.

## 제2조 (계약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참가비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은 2026년 1월 9일까지 납부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기 납부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부스 규모, 참가실적, 참가신청 일자 및 참가비 납입 순서 등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전시회의 공간 조화,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상호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잔존물 처리비용: 1m<sup>3</sup>/ 300,000원)

## 제5조 (해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 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전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한 전시면적 일부 사용을 취소하거나 참가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포기(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부가세 별도)  
가. 2025. 10.23 이전 : 취소(또는 축소) 시 원 참가비의 50% 납부  
나. 2025. 10.24~2026. 1.21까지 : 취소(또는 축소) 시 원 참가비의 70% 납부  
다. 2026. 1.22일 이후 : 취소(또는 축소) 시 원 참가비의 100% 납부  
\* 취소시점은 전시자의 취소요청 공문서가 주최자에게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전시자가 참가계약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한 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협/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공동관 형태로 중복 참가 시, 기 신청 부스에 대한 규모 축소, 이월 및 취소는 불가하다. 전시자가 공동관 형태의 부스로 참가하더라도 기 신청 부스에 대해 축소 및 취소(포기)를 하는 경우 상기 [제5조 해약] 참가 규정을 따른다.

## 제6조 (개인정보 처리 및 초상권 사용 등의)

1. 주최자는 계약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회사명, 부서, 직책, 기타 작성 항목)를 수집한다.
2. 주최자는 수집한 위 개인정보를 자기전시회 홍보, 참가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의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하며 목적이 달성된 이후 예외 없이 파기한다.
3. 전시기간 동안 주최자가 촬영하는 사진 및 영상에서 전시자 및 관람객의 초상권은 전시회 홍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초상권의 사용은 인쇄 홍보물, 영상 홍보물, 홈페이지, 뉴스레터, 온라인 SNS 플랫폼 등 당사 전시회 홍보에 한정되며 사용기간은 해당 전시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 제7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전시회 개최가 취소되는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2. 다만, 국가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및 전염병, 태풍, 지진, 홍수, 폭우, 화재, 폭발, 테러, 교통·통신망 마비, 파업 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변경·축소·일시 중단될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정해진 공사기간 및 전시 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설치기간동안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시간외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모든 장치업체는 코엑스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시간 외 비용산출 : 작업시간 x 1,100,000원 (부가세 별도)

##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 철거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전시기간 중에는 전시품 반출이 금지되며 주최자가 제시한 반출일자 및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10조 (전시장 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기간 중에는 전시품 반출이 금지되며, 주최자가 제시한 반출 일자 및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제11조 (방화 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전시자는 장치, 전시, 철거기간 중 배정 면적 내 발생하는 누전 및 화재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주최자는 필요 시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보충 규제)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 전시기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이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